<u>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·분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</u> (제20조의8제1항제3호 관련)

구 분	지정기준
인력 기준	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. 전자・통신・전파 등 전파통신 분야 또는 경영・경제・법률 분야 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전파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2년 이 상인 사람 나. 전자・통신・전파 등 전파통신 분야 또는 경영・경제・법률 분야 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전파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 상인 사람 다. 주파수 소요량 또는 이용현황 조사・분석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
시설 기준	1. 주파수 소요량과 이용현황 조사·분석 등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·시스템을 갖출 것 2.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보안유지가 가능한 별도 공간을 갖출 것